

KC 신규품목 지정 관리(감열지)

-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

국가기술표준원 고시(2021. 8. 3.)

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감열지 원지를 재단 및 인쇄 등 가공한 최종제품의 안전요건, 시험 방법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여 KC 대상 품목으로 관리 예정이다.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2년 5월 28일부터 감열지를 KC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 용품으로 관리할 예정임

▪ 적용범위

- 해당 기준은 감열지* 원지를 재단 및 인쇄 등 가공 한 최종제품의 안전요건,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.

***감열지**란 열에 노출 시 색이 변하는 현색제가 배 합된 재료로 코팅된 특수한 용지로서, 감열프린터 를 통해 인쇄되고 가정 및 상업시설과 같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하여 규정

▪ 안전요건

- 감열지의 비스페놀 A 함유량은 표 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함

[표 1]

항목	규정
비스페놀 A	0.02 wt% 미만

▪ 시험방법

- 비스페놀 A 용출 -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-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

▪ 표시사항

- 제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
- 다만, 제품의 직접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단위 포장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으로 별도 표시할 수 있음

- ① 제조연월
- ② 제조자명
- ③ 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
- ④ 주소 및 전화번호(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,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)
- ⑤ 제조국명(국내 제조품은 생략 가능,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)

▪ 시행일자 : 2022년 5월 28일